

이사회 규정

주식회사 HJ중공업

제1장

제1조 [목적]

이 규정은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[권한 및 의무]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는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최상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2장

제4조 [구성]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 [의장]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인 사장으로 한다.
- ② 전항의 대표이사가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인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그 직무를 대행할 직급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급별 연장자 순위에 의한다.

제3장

제6조 [종류]

-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사정에 따라 개최 여부 및 개최일을 정하여 소집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할 부의 안건의 발생 또는 기타 필요 시 개최한다.

제7조 [소집권자]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, 의장이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의장 또는 그 직무 대행 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 [소집절차]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단, 경영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일의 1일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9조 [결의방법]

-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0조 [이사회 부의사항]

- ①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1) 주주총회의 소집결정

- 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3) 재무제표의 승인
 - 4) 정관의 변경
 - 5) 자본의 감소
 - 6)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
 - 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
 - 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
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9) 이사,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 - 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 - 12) 배당의 결정
 - 13)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14) 이사의 보수
 - 15) 임시주주총회 등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, 기준일 공고
 - 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할 사항
 - 17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
 - 18) 주식의 소각
2.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
- 1) 연간 사업계획 확정 및 중요사항의 수정
 - 2) 건 당 자기자본의 5%이상의 신규시설 투자, 시설증설, 별도공장 신설 결정
 - 3) 건 당 자기자본의 2.5% 이상의 타법인 출자/출자지분 처분 결정
 - 4) 건 당 자기자본의 2.5% 이상의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, 법정관리, 해산사실 확인
 - 5) 건 당 자산총액의 2.5%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, 처분결정
 - 6) 지점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 - 7) 대표이사 선임/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
 - 8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9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 - 10)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내부거래
3. 재무에 관한 사항
- 1) 결손의 처분
 - 2) 신주의 발행, 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
 - 3)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·상대방의 지정
 - 4) 준비금의 자본전입

- 5) 우선주식의 우선 배당률 결정
 - 6)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,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결정
 - 7) 재무제표의 승인
 - 8) 중요한 금융거래
 - 가) 은행, 보험사 차입 및 한도약정
 - 나) 제2금융권 차입한도 약정
 - 다) 차관
 - 라) 자금대여, 채무보증, 담보제공
 - 마) 선물거래
 - 9) 건 당 자기자본의 1%이상의 출연 및 기부
 - 10) 반기 재무제표의 승인
4. 이사에 관한 사항
- 1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 - 2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3) 이사회 소집 권 자의 특정
 - 4) 산하 위원회 관련 사항의 결정
 -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
 -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 위임사항의 결정
5. 기타
- 1)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(운영절차)의 개폐
 - 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 이사회 결의로 산하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2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 [위임]

- ① 이사회의 결의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을 산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로부터 전항의 위임은 받은 위원회는 위임사항에 대한 결의 즉시, 각 이사에게 그 내용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로부터 전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사회의 결정이 우선한다. 다만,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이사회 결의는 위원회 내용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 [긴급집행권]

-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집행이 부득이 하면서도 긴급한 업무를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집행 후 지체 없이 이사회에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에 추인절차를 해태 하거나 추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,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대표이사에 있다.

제13조 [관계인의 출석]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4조 [보고사항]

해당 임원은 분기별 영업실적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간사와 협의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 [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]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,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 [의사록]

- ① 이사회에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,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 또는 지점에 비치한다.

제17조 [간사]

-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.

부칙

제1조 [시행일]

1.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2조 [산하 위원회 위임]

1. 이사회 결의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그 결정을
경영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.